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률 제2023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가목 중 “사업으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를 “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를 “육성하는 산업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를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본다. 이하 같다”를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장에서 같다)·군·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를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제67조”를 “제67조제1항”으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74조의2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2항 단서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와”를 “시·도지사등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7조제7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등에게”로,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7호 중 “취소”를 “취소·재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시허가 및 취소”를 “임시허가·변경·취소·재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라 한다)”를 “비수도권 시·도등”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등에게”로,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시·도는”을 “비수도권 시·도등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3조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로,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로,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를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

구 관할 시·도지사, 실증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6조제6항”을 “제86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정비에”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6항에도”를 “제9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 단서 중 “시·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6조제8항”을 “제86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로,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를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2항) 본문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로,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6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113조 후단 중 ““시·도”로”를 ““비수도권 시·도등”으로”로, ““시·도지사”로”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로 한다.

제118조를 삭제한다.

제131조제2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거목”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1조의2를 제141조의4로 하고,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41조의3(포상) 중소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3조제1항제4호 중 “제90조제12항”을 “제90조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 정비 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 적

용 결과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까지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추가하며, 실증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